

누가 요청할 수 있습니까?

피보호 당사자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판사에게 접근 금지 명령의 변경이나 종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접근 금지 명령으로 보호되는 다른 인물(DV-130 양식 항목 3 또는 JV-255 항목 3에 나열되어 있음)은 명령의 변경이나 종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가정 폭력 접근 금지 명령의 변경 또는 종료를 요청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법원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 날짜가 제시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류가 송달됩니다. 법원 날짜에 출석해야 판사가 귀하의 요청을 승인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단계별 지침은 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접근 금지 명령을 갱신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하가 피보호 당사자인 경우, 본인의 접근 금지 명령 갱신을 법원에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만료되기 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접근 금지 명령 갱신 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DV-700-INFO](#) 양식의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 갱신을 요청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를 참조하십시오.

접근 금지 명령이 만료되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심리 후 접근 금지 명령(DV-130, DV-730 또는 JV-255)이 만료된 경우, 3페이지에 기재된 단계를 따르지 마십시오.

- 접근 금지 명령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새로 요청해야 합니다. [DV-505-INFO](#) 양식의 가정 폭력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 접근 금지 명령에 양육권, 면접 교섭권(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 자녀 양육비, 배우자 부양, 동거인 부양 또는 자산 명령이 포함된 경우 그러한 명령은 효력을 유지하며 판사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의 변경을 요청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FL-300-INFO](#) 양식의 명령 요청서에 대한 정보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법원 수수료가 부과되나요?

아니요. 법원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종료하거나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시 접근 금지 명령(DV-110 또는 DV-116 양식)을 받았고 해당 명령을 변경하거나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변호사나 법원 산하 자력 구제 센터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변경하거나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이 절차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청소년 접근 금지 명령을 변경하거나 종료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년 보호 법원에서 승인한 가정 폭력 사건에 따라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고(JV-255 양식), 해당 소년 사건이 종결(기각)된 경우, 3페이지에 기재된 단계를 따라 청소년 접근 금지 명령의 변경 또는 종료를 요청하십시오.

- 소년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인 경우, 변호사에게 접근 금지 명령 변경 또는 종료 방법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 사법(소년 범죄) 사건에 따라 승인된 청소년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JV-265 양식), 해당 접근 금지 명령을 변경 또는 종료할 방법은 변호사나 검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심리 후 접근 금지 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명령을 승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판사가 명령을 승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페이지의 단계를 따라 요청하십시오. 원하는 명령이 무엇인지, 그러한 명령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귀하가 설명해야 합니다.

제 접근 금지 명령은 언제 변경되거나 종료되나요?

접근 금지 명령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권리는 법원에만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은 판사가 해당 명령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반드시 명령대로 따라야 합니다.



변경이나 종료를 요청할 수 있는 명령은 무엇인가요?

심리 후 접근 금지 명령에서 승인된 모든 명령은 변경이나 종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총기, 탄환이나 방탄복 관련 명령은 제외입니다. 총기, 탄환 또는 방탄복 소지 제한은 판사가 해제할 수 없습니다. 직무상 총기를 소지해야 하는 경우, 판사가 제한된 면제를 승인할 수 있지만 엄격한 요건이 수반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변호사나 법원 산하 자력 구제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자녀 양육권 명령을 변경하고자 하면 어떻게 하나요?

- 접근 금지 명령을 통해 양육권 명령을 받은 경우, 이 절차를 이용해 그러한 명령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페이지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 양육권 또는 면접 교섭권 명령이 별도의 가정법 사건에서 비롯된 경우, 이 양식 3페이지의 단계를 따르지 말고 [FL-300-INFO](#) 양식 명령 요청서에 대한 정보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가정 폭력에 있었던 경우 자녀 양육권 명령에 특별한 법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selfhelp.courts.ca.gov/domestic-violence-child-custody를 참조하십시오.

제가 접근 금지 명령 종료를 신청하면 양육권, 면접 교섭권, 양육비 또는 자산 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판사가 접근 금지 명령을 종료해도 각종 양육권, 면접 교섭권(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 자녀 양육비, 배우자 부양, 동거인 부양 또는 자산 명령은 법원에서 해당 명령도 변경 또는 종료하지 않는 한 효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력 구제 센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법원 자력 구제 센터에서 무료로 법무 지원을 제공합니다. 담당 지역 법원의 자력 구제 센터는 www.selfhelp.courts.ca.gov/find에서 찾아보십시오. 자력 구제 센터는 변호사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사건과 관련해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양식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센터 직원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업체를 소개해 줄 수도 있습니다.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INT-300](#) 양식을 사용해 통역사를 요청하거나 서기에게 요청 방법을 문의하십시오.

장애가 있어서 편의 시설이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MC-410](#) 양식을 사용해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해당 지역 법원의 장애/ADA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십시오.

기타 도움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전국 가정 폭력 핫라인(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에서 무료, 비공개로 안전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100여 가지 언어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www.thehotline.org를 이용하거나 전화 1-800-799-7233 또는 1-800-787-3224(TTY)번으로 문의하십시오.

기밀 주소 프로그램

귀하가 가정 폭력 피해자이거나 가정 폭력 피해자와 함께 사는 경우, Safe at Home이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며, 주소를 비공개로 유지하도록 도와드립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sos.ca.gov/registries/safe-home를 참조하십시오. 승인되려면 몇 주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요청을 제출하는 단계

① 법원 양식 작성:

- [DV-300](#) 양식, 접근 금지 명령 변경 또는 종료 요청 및
- [DV-310](#) 양식, 접근 금지 명령 변경 또는 종료를 위한 법원 심리 및 임시 명령 통지서(항목 1, 2만)
- 양육권 및 면접 교섭권 명령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DV-305](#) 양식 양육권 및 면접 교섭권 명령 변경 요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② 법원에 양식 제출

양식을 법원 서기에게 제출합니다. DV-300 양식에 현행 심리 후 접근 금지 명령 사본을 포함해야 합니다. 직접 제출해도 되고 전자 파일로 제출해도 됩니다. 제출 방법이나 제출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법원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법원 웹사이트는 www.selfhelp.courts.ca.gov/find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법원에서 서류 돌려받기

법원에서 서류를 돌려받으면 법원 날짜가 부여됩니다(DV-310 양식 참조). 임시 명령을 요청한 경우, 판사가 해당 요청을 승인했는지 거부했는지 DV-310에서 확인하십시오. 사본을 최소 2부 받아야 합니다. 한 부는 귀하 본인의 보관용, 다른 한 부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용입니다. 서류를 전자 파일로 제출한 경우, 법원에서도 전자 파일로 서류를 돌려드립니다. 단, 귀하가 직접 픽업하거나 우편으로 받겠다고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④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류 송달

- 귀하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당사자인 경우, 피보호 당사자에게 인편으로 직접 서류를 송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인이 각종 법원 서류 사본을 모두(DV-310, 항목 4c에 나열되어 있음) 직접 피보호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달하는 사람이 귀하 본인이거나 접근 금지 명령에 기재된 사람이면 안 됩니다. 그런 다음 송달인이 송달 증명서([DV-200](#) 양식)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을 마친 DV-200 양식을 복사하여 법원에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피보호 당사자에게 인편으로 직접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변호사나 자격 구제 센터에 다른 선택지를 문의하십시오.
- 귀하가 피보호 당사자인 경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인이 각종 법원 서류 사본을 모두(DV-310, 항목 4c에 나열되어 있음)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달하는 사람이 귀하 본인이거나 접근 금지 명령에 기재된 사람이면 안 됩니다. 그런 다음 송달인이 송달 증명서([DV-250](#) 양식)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을 마친 DV-250 양식을 복사하여 법원에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법원 심리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판사에게 심리 일정 재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DV-315](#) 및 [DV-316](#)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십시오. 판사가 요청서 내용을 검토하고 심리 일정을 재조정할지 말지 결정합니다. 법원 날짜 이전에 법원에서 보낸, 판사가 서명한 DV-316 양식을 받지 못하거나 판사가 심리 일정 재조정 요청을 거부한 경우, 여전히 요청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법원 날짜(DV-310 또는 DV-316 양식에 기재되어 있음)에 출석해야 합니다.

⑤ 법원 심리 준비 및 참석

법원 심리에서는 판사가 귀하의 접근 금지 명령 변경 또는 종료 요청을 승인할지 말지 결정합니다. 심리에서는 귀하와 상대방이 각자 자기 입장에서 발언할 기회가 있습니다. 증거나 증인이 있으면 제출/동석하십시오. 법원 심리에 직접 참석하고 싶지 않으면 법원 웹사이트에 접속해 전화나 화상 통화로 참석하는 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